

第32回
(休會中)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4年4月21日(木) 午前10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條例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審査의件
2. 第3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條例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審査의件(金炯九議員外13人發議) 1面
2. 第3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7面

(10時08分 開議)

○議事係長 鄭益煥 지금으로부터 第32回 臨時會 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를 하겠습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運營委員會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會議에서 審査할 案件은 城北區議會 條例整備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과 第33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분 委員님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2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條例整備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審査의件(金炯九議員外13人發議)

(10時09分)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條例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審査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현재의 條例의 대부분이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기 이전에 行政便宜에 따라 制定되었거나 改正된 것입니다.

이에 城北區 條例 全般에 대하여 地域實情에 맞고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條例로

整備하고자 條例整備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으로 特別委員會 構成은 城北區議會 會議規則 第9條 4項에 特別委員會 委員 定數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規定된 바, 特別委員會 定數를 오늘 決定하여 各 常任委員會에 配定 選任토록하여 議長이 推薦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委員會 委員은 몇 인으로 構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敦洙委員 各 常任委員會에서 5분씩 15인으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15인이 좋으면 15인으로 이 特別委員會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研究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運營委員會 5명이 選出되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또 特別委員會가 한 5명 選出되고 委員長, 幹事하게 되면 아마 두세분 정도 나오면 또 다른 特別委員會 배정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한 5명 정도로 할까요?

(「5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俞鎮武委員 말하자면 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深度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安敦洙委員 15명이하라고 그랬으니까, 各常任委員會에서 5분씩 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말씀하세요.

○徐海善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常任委員會가 얼마 안 있으면 構成이 안 됩니까? 그러면 各 常任委員會에서 차출되는 運營委員이 5명이 나가고 또 여기 特別委員會에다 5명을 배정하면 10명이 各 常任委員會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떠한 事案이 發生했을 때 特別委員會를 構成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各 常任委員會別로 한 3명씩을 정말 深度있게 區廳에 가서 뵈다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여금 한 委員會에서 3명씩을 配定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金炯九 좋은 생각하셨는데, 또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시죠?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俞鎮武委員님 말씀하세요.

○俞鎮武委員 저희가 特別委員會다 常任委員會다 두는 것은 深度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것입니다. 우리 全議員이 다 해야 마땅할 일을 그것은 특별히 하기 위해서 特別委員會를 두는 것인데 이 條例나 法은 아무래도 우리가 심도있게 걸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15명이 妥當하다고 보고 15명에 제가 贊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네, 수고하셨습니다. 安傑瑢委員님 말씀하세요.

○安傑瑢委員 물론 俞鎮武委員님 말씀이나 우리 徐海善委員님 말씀이 다 일리있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 얘기인 즉 모두가 다 이 條例特別委員會가 構成되기 이전에는 各 事案別로 各 常任委員會에서 걸른 事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議論하자는 研究하자는 趣旨에서 特別委員會가 構成되니만큼 아까 徐海善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한 3인정도 構成해 가지고 거기에서 1次 걸른다음에 다시 또 常任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야 할 事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特別委員會 要

員을 절약해서 줄여서 한 3인씩 推薦해 가지고 그렇게 構成해서 우리가 運營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물론 아까 各 常任委員會別로 5명씩 推薦해서 15명하는 案도 이렇게 되어있고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고 우리가 劃期的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效果的으로 效率的으로 잘 하기 위한 方法에서 아까 徐海善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眞意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라고 하면 그것도 뜻이 있다고 보고 다시 말씀 올렸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李萬載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萬載委員 지금 人員에 關係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5人 以內에서 各 常任委員會別로 4명씩 하면 한 12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人員이 12명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折衷案을 내놓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네, 韓春子委員님 말씀하세요.

○韓春子委員 지금 特別委員會가 다른 委員會하고는 달리 條例整備特別委員會입니다. 그러면 條例整備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議員으로서 3年을 지냈지만 條例가 잘 정해져서 效率的으로 우리가 일하기가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정말 잘못된 條例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條例特別委員이 되시면 어느 누가 됐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 地域發展은 물론이지만 이 條例라는 것은 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면 심도있는 것도 심도도 중요하지만 根本的으로 우리 區에 맞게 잘 制定해서 策定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원도 또 너무 많은 人員도, 너무나 적다보면 우리 의원님들 바쁘시다고 가시는분 계시면 이것 중요한 문제가 좀 稀釋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너무 많은 人員을 두시면 바쁘신 분들 各 常任委員會에서 일하시기도 힘든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李萬

載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유두리가 약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側面에서 李萬載委員案에 同意를 드리면서 한 委員會에서 4名정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各 常任委員會에서 5人으로 하여 15人으로 하자는 案과, 各 常任委員會에서 3人으로 하여 9人으로 하자는 案과, 또 各 常任委員會에서 4人으로 해서 12人으로 하자는 案이 나왔습니다. 이 案을 가지고 表決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趙基燦委員 각자 表決處理하는 것보다도 좀더 討論을 해보고 意見을 압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實質적으로 條例 審議委員會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한번 정리한다고 하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 30年은 權威主義時代에 發行되었던 제반 行政規制, 일컬어서 行政便宜主義라고 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수 精銳主義로 하자는 原則도 참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會議을 進行하다보면 지금 慣例上 常任委員會活動을 보면 대부분 바빠서 가버린다 어쩐다 보면 參席率이 오늘은 참 좋습니다마는 평소에 저조한 實態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人정도로 하는게 各 常任委員會에서 5名씩 選出을 해서 다같이 동참하는 다같이 동참해서 5人씩 해가지고 構成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것도 各 委員들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조명해 보고 현 시점을 한번 짚어보고 미래를 향하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可及的이면 많은 수가 동참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本委員은 한 常任委員會에서 5名씩 推薦해서 15名으로 構成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安敦洙委員님 말씀하세요.

○安敦洙委員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럿이 동참을 해서 같이 중요한 問題도 있지만 또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럿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 것

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또, 俞鎮武委員님.

○俞鎮武委員 저도 그 이야기에 한가지 더 添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各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가 모두 15人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活動을 해왔고, 그리고 各 分科에서 委員會를 뽑아 내보낼때는 성실하게 참여 안 할 사람은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어디 바둑알 나눠놓듯이 서로 인원만 채워놓고 제날짜에 와서 심도있게 안하는 사람들은 各 分科에서 選拔할 적에 조금 責任있게 선발해서 내 보내주시면 이런 애기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네, 金承泰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承泰委員 저는 우선 15人이내로 하는 것을 同意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不誠實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다룸으로써 내가 발견치 못한 잘못된 條例를 어떤 분이 또 發見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條例를 많이 研究를 해야 되는 그런 問題입니다. 그래서 3분씩 精銳化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發見치 못한 것 또 어떤 분이 發見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重要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條例를 한번 整備한다는게.

그래서 44名이 다 했으면 좋은데 44名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5人이 妥當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일단은 이것을 表決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舉手表決로.

먼저 5人으로 해서 15人으로 하자는 案인데 여기에 贊成하시는 議員님 舉手해주세요.

(거수)

지금현재 14분 오신 분 중에서 8분이 15人으로 하자는 同意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人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會는 15人으로 決定하도록 하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5人을 각각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條例整備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대하여 質疑, 答辯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安傑瑢委員 條例整備요?

○委員長 金炯九 條例整備 安傑瑢委員님, 말씀하세요.

○安傑瑢委員 조금 전에 本委員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條例整備 特別委員會가 15인으로 構成된 직후에 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한 사안들을 직접 本會議에서 지금 議案 上程해 가지고 審議하는 事項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事項을 전례와 같이 각 常任委員會에서 한번더 걸러서 本會議로 上程하게 되는 것인지 議會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本委員은 條例整備 特別委員會가 우리가 한차원 높이 생각을 해서 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本會議나 각 常任委員會에서 하는것도 좋고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한번 사전에 委員會에서 審議를 걸르자는 맥락에서 條例整備特別委員會를 構成한다고 알았는데 이렇다고 봤을때 어떤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것인지 答辯을 해 주세요.

○委員長 金炯九 에 수고하셨습니다.

(場內騷亂)

조용히 해 주세요. 專門委員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니까 잠깐 설명을 들어보세요.

○專門委員 宋 鍊 당초에 이 特別委員會를 어떻게 運營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발의할때 명확히 나타나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법에 나와있는 事項만 제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會議規則 19條를 보면은 議長은 議案의 발의 또는 제출된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 후 常任委員會의 審査를 받도록 그렇게 規定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特別委員會에서 전부 問題있는 條例를 발제를 해 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으로 特別委員會는 만족하고 그것을 本會議에 提案을 하면은 本會議에서 議長은 常任委員會에 回附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議決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徐化錫委員 그렇다면 特別委員會를 제정한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委員會에서 5명을 選任해서 15명을 構成해 가지고 開閉委員會를 構成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또 本會議에서 다시해서 보낸다고 한다면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專門委員 宋 鍊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委員會別로 한다면은 常任委員會 全委員이 다 출근해 가지고 전부 條例 問題있는 것을 다 檢討를 해야 돼요 委員會別로 한다면은, 다 나와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거기서 몇분을 차출해 가지고 條例를 全般的으로 檢討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 特別委員會는 그렇찮아요. 委員會別로 하면은 전부 자기소관 條例를 다 나와서 다 檢討해야돼요.

○韓春子委員 그러면 대충만 걸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特別委員會에서.

○專門委員 宋 鍊 그러니까 特別委員會에서 전부 條例 全般的으로 委員會에 상관없이 전부 問題를 걸러가지고 발제해 가지고 案까지 만드는 것이죠. 案을 만드는 것까지 特別委員會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基燦委員 그러니까 問題는 지금까지 60年代부터 70年代, 80年代를 거쳐오면서 제정됐던 條例, 條例 전부를 檢討해 가지고 問題가 있다하는 것은 발제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압축을 시켜가지고, 本會議에 上程한다, 이말이죠. 案을 만들어 가지고.

○專門委員 宋 鍊 案을 만들어 가지고.

○趙基燦委員 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開閉해야 된다, 이것은 정리 해야 된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요약, 압축해 가지고 本會議에서 上程하면은 本會議에서 決定하는것, 이런 제도가 되죠?

○委員長 金炯九 일단 常任委員會를 넘어가야죠.

○趙基燦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압축된 問題가 常任委員會로 다시 配定된다,

○專門委員 宋 鍊 그러니까 特別委員會에서

檢討해 가지고 案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 改善한 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特別委員會 委員長이 委員발의로 해 가지고 本會議에서 提案說明하죠. 이렇게 改正 條例案을 提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提案說明 접수해 가지고 이것은 市民福祉 분과면 市民福祉 委員會에서 이것을 檢討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地域開發은 地域開發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徐化錫委員 그렇다면은 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한 案件을 常任委員會에서 회부한다 이거예요. 회부하면은 委員會에서 開閉코자한 條例가 委員會에서,

○專門委員 宋 鍊 바꾸어 질 수도 있죠.

○徐化錫委員 反對意見を 제시해서 바꿀수 있다 이거예요. 特別委員會 제정의 대담성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것이죠.

○專門委員 宋 鍊 이것은 전부 중지를 모으자는 얘기니까 特別委員會가 전부다 옳다는 것은 아니죠. 特別委員會 의견이 다를수도 있죠 常任委員會에서.

○趙基燦委員 特別委員會가 지난번 지금까지 내려오는 條例를 開閉해서 決議權까지는 없다는 이말입니다.

○徐化錫委員 결의는 않는다하더라도 本會議에 올라가서 決議하는데 구태여 다시 常任委員會에 올리느냐 이것이죠.

○委員長 金炯九 金承泰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承泰委員 우리 徐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기는 한데 저희가 原理主義를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特別委員會는 말 그대로 特別委員會지, 우리 議會자체가 運營되는 것은 常任分科委員會입니다. 常任委, 그렇기 때문에 常任分科委員會에서 언제든지 걸려져서 原理적으로 一元化해야 되기 때문에 宋委員님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特別委員會에서는 3개 常任委員會에서 하는 것을 전부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각 常任分科 委員會로 가서 우리가 요새 條例 改正할때 꼭 各分科別로 필요한 사항들은 꼭 審査報告를 하잖아요. 그런식으로 우리는 常任分科 委員會를 運營을 原則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宋委員님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專門委員 宋 鍊 제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區廳에서 條例를 改正하고 제정하는 것은 원래는 區廳權限이 아닙니다. 이것은 區議會 고유권한인데 편의상 區廳에서 業務를 하다보니까 區廳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우리한테 審議를 받는 것이죠. 原則적으로 제정권은 議會에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할 수도 있는 일을 우리 議會에서도 해 보자, 지금 實質적으로 區廳에서 하고 있는데 議會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그래서 議會에서 區廳에서 제안하기 전에 議會에서 檢討해 보고 안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特別委員會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네 이해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徐海善委員 討論 좀 합시다.

○委員長 金炯九 徐海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海善委員 宋專門委員님, 特別委員會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가 構成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까지 議會에서 3년동안 條例案을 檢討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案이 나왔을 때 檢討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趙基燦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그동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오기까지 그 條例案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地方自治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꼭 檢討를 해 가지고 問題點이 있는 것은 살릴것도 있고 폐할 것도 있는 것을 발췌해서 각 常任委員會別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問題點이 있는 것을 本會議에 報告해서 이번에 한번 총 整備해보자는데 特別委員會 構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라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60년대 부터 시작해서 30년동안 꼭 해온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으로 決定했으니까 15명이 꼭 앉아서 關係公務員 불러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그

래가지고 問題點을 찾아내자는데 여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맞죠」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다른 委員님, 討論하실 분 말씀 하세요, 없으십니까?

○安傑瑢委員 지금 徐海善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目的이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條例案이 올라와 신청될 것이 그 特別委員會에서 다루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지요.

○委員長 金炯九 그것도 研究해야죠.

○徐海善委員 앞으로 오는 안은 각 常任委員會別로 審議하게 되어 있고

○委員長 金炯九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討論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條例 整備委員會가 할 義務는 과거 30년 동안에 쌓였던 行政便宜를 제거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本質으로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안은 그냥 常任委員會로 配定이 돼요. 그래서 本會議 審議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고 과거에서 일어났던 諸般問題, 이것을 整備對象으로 하고 目的으로 삼아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傑瑢委員 그것을 否認하고 不正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原則이고 本會議 석상에서 우리 李敏衡 議長님께서 우리 본 議員님들한테 전체 議員님께 說明하실때 얘기는 각 條例案들이 한 회기에 11件씩, 15件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각 常任委員會에서 걸른다고 해도 審議를 깊이 심도있게 걸른다고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걸르지 못하기 때문에 1次 條例 特別委員會에서 說明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월권이죠」하는 이 있음)

○李萬載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炯九 우리 李萬載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萬載委員 지금 안건 上程된대로 서울特別市 城北區 條例整備特別委員會인데 글자 그대로 擴大解析할 것 없어요. 條例整備가 필요한 條例를 整備하는 委員會입니다. 그런 관계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죠.

○專門委員 宋 鍊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金炯九 우리 專門委員님, 말씀좀 들죠.

○專門委員 宋 鍊 國會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國會에서는 法案을 審査할때 常任委員會에서 審査를 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넘어 가느냐 하면은 法司委員會로 넘어갑니다. 法司委員會에서는 常任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을 또 여러가지 자구문제라든지 법체계문제라든지 專門的으로 審査해서 또 넘기는 節次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은 法司委員會 機能을 조금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安委員님은 特別委員會가 기왕에 條例를 整備하는 任務외에 國會의 法司委員會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安傑瑢委員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하는 特別委員會 任務를 떠어야 하는 것이 原則이지, 물론 여기 條例 整備特別委員會의 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條例整備 特別委員會가 지금 構成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한 그것까지도 견비해야 된다, 本委員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金榮植委員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네. 金榮植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植委員 지금 安傑瑢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特別委員會가 構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整備特別委員會라 하는 것은 과거에 議會가 생기기전에 城北區條例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맞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國會法司委라든지 이뜻은 아닙니다.

○趙基燦委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지금 安傑瑢委員 論理는 國會에서도 法司委員會가 있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實質으로 지금 法體系上 不可能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特別委員會에서 다른 行政에 올라오는 法案審議한 것을 또 審議한다고 하는것은 制度上 있을 수 없고 혼란만 惹起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問題는 하등의 論議의 對象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문자 그대로 過去를 整備하는 측면에서 이 委員會가 存在價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를 정비해 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은 다른 異議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네, 우리 幹事 한 말씀하세요.

○幹事 申晉玉 지금 상당히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條例整備特別委員會 構成을 하려면 委員會에 어떤 條例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상설로써의 運營規定을 만들어서 條例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기타 자세한 것은 特別委員會 構成을 해서 條例를 만들어서 거기서 運營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同意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炯九 네, 그렇게 해야되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幹事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運營規定을 만들어가지고 運營을 해야 될 겁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더이상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으시면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條例整備 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을 原案대로 本會議에 附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第33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39分)

○委員長 金炯九 이어서 第33回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어제 本會議에서 第2代 各常任委員會 委員을 再構成하였으나, 委員長은 다음 會期에 選出한다고 議決한 바 있어, 이를 위해 第33回 臨時會에서 各 委員長을 選出하고자 합니다.

議員 海外研修團이 4月30日 出國하기 때

문에 4月30日 이전에 臨時會議를 集會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臨時會 會期를 4月26日 1日間으로 하고자 하는데 좋으신 意見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第33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會期는 4月26日 1日間으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臨時會 開議日時는 午前 10時로 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第33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集會는 94年4月26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第32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41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金 承 泰	金 榮 植	朴 演 洙
徐 海 善	徐 化 錫	申 宗 鉉
安 傑 瑢	安 敦 洙	俞 鎮 武
李 萬 載	趙 基 燦	韓 春 子
金 炯 九	申 晉 玉	

○缺席委員

李 天 浩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